

BK21플러스 사업 규정 주요 개정사항 안내

<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진흥팀 / 2016.07.27.>

「BK(두뇌한국)21 플러스 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훈령」 주요 개정사항

□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평가관리비 집행기준 신설 : 제7조(사업관리 전담조직)

기 존	변 경
○ 전문기관 평가관리비 집행 기준 없음	○ 전문기관 평가관리비 세부 집행기준 제시([별표 5 신설])

□ 이의제기 기한 상위 법령기준 적용 : 제15조(협약의 해지)

기 존	변 경
○ 협약 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제기	○ 상위법인 학술진흥법에 따라 협약 해지의 경우 이의 제기 기한 30일 이내로 확대

□ 파견 중인 교수의 사업단 참여 자격 명확화 : 제24조(참여교수)

기 존	변 경
○ 파견 중인 교수에 대한 별도의 참여 자격 기준 없음	○ 국내외 기관 파견 기간에 따른 교수의 사업 참여 기준 명시

□ 기타사항

- 대규모 사업 연구책임자의 BK사업 참여 제한 기준 관련, 사업비 규모 기준 명확화 : 제9조(사업수행 주체)
 - ‘사업비 10억원 이상’의 대규모 사업 기준 문구에 대한 해석에 혼란의 여지가 있는 바, ‘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’으로 문구 수정
- 산학협력 전담인력 지원목적 수정 : 제26조의 2(산학협력 전담인력)
 - (前)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고급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⇨ (後)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

「BK(두뇌한국)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지침」 주요 개정사항

□ 특화전문인재양성형 신설학과 사업단 원소속학과 대학원생 참여기준 변경 : 제7조(대학의 의무사항)

기 존	변 경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학과 또는 협동과정 소속 참여대학원생을 지원대학원생으로 우선 선발 ○ 대학원 단일 학과 편제가 완성되기 전까지 통합하여 운영되기 전 소속 학과 또는 협동과정의 참여대학원생도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학과 소속 대학원생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하는 현재 규정을 유지하되, 예외사항 인정기한 명시 - 대학원 단일학과 또는 단일 협동과정의 편제가 완성되기 전까지 운영된 학과 또는 협동과정 소속의 참여대학원생은 2017년 2월까지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 가능

□ 사업단장 변경사유 및 예외규정 추가로 해석 명확화 : 제8조(사업단의 장)

기 존	변 경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변경사유 : 1년을 초과하는 연구년, 이직, 퇴직, 사망 등 ○ 예외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년 이내의 연구년 중인 교수 중 국내연구수행으로 직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위 변경 없이 사업수행 - 1년 이내의 연구년, 해외 연구 활동, 파견 등으로 인해 사업단장이 부재시 참여교수 중 한 명의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변경사유 : 현재 규정을 유지하되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휴직,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관 파견 추가 ○ 예외사유 : 현재 규정을 유지하되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개월 이내 국외연구 수행으로 직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위 변경 없이 사업수행 추가 -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지속적인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활동, 1년 이내의 파견 등으로 인해 부재시 사업단장 변경 또는 참여교수 중 한명이 대리체제 운영 선택

□ 사업단장 연구과제 참여기준 명확화 : 제8조(사업단의 장)

기 존	변 경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(SRC, ERC, MRC, NCRC(GCRC 포함), ITRC 등) 및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의 연구책임자를 겸할 수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CRC 추가 ○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의 연구책임자를 겸할 수 없도록 기준 명확화

□ **참여교수의 참여기준 훈령과 일치 : 제9조(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)**

기 준	변 경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여교수가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(6개월 이상)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훈령 :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참여 인정 - 지침 :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 인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위 규정인 훈령으로 기준 일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,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(6개월 이상)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참여 인정

□ **참여교수 규모 기준 변경 : 제10조(참여교수 변경 및 예외사유)**

기 준	변 경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신청 시를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간평가 이후 재선정 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음

□ **수시점검의 범위 훈령에 따라 구체화 : 제16조(수시점검)**

기 준	변 경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훈령 :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○ 지침 : 수시점검(사업비 점검)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인력 면담 등 사업수행 현장을 파악할 수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위 규정인 훈령에 따라 사업비 점검 외 규정 위반 등 사업 추진현황 전반 사항을 점검대상에 구체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비 부당집행, 규정위반 정도에 따른 관련자 참여제한 조치 등 추가

□ **이의제기 기한 상위 법령기준 적용 : 제22조(이의제기)**

기 준	변 경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점검 및 평가 결과 이의가 있을 시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제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규정을 유지하되, 협약해지 또는 참여제한 처분의 경우 이의제기 기한 상위법인 학술진흥법에 따라 30일 이내로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의신청이 불가한 사유 등 추가

□ **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 조치 : 제28조(대학원생 연구장학금)**

기 존	변 경
○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에 대해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 일괄관리, 일정금액 회수 등의 행위 엄격히 제한. 위반시 해당 사업단과의 협약 해지 가능	○ <근거마련> 현재 규정을 유지하되,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을 위한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수취·보관 의무사항 추가
○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(사업비점검)을 실시 할 수 있으며, 점검 결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업 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음	○ <관련 제재 근거 명확화> 단순 사업비 점검 외 다양한 사안에 대한 수시점검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하고, 제재 조치 사유(연구장학금 공동관리) 및 방안(참여제한) 추가

□ **기타 사항**

- 지도교수가 두 명 이상인 경우의 대학원생 사업 참여 가능 기준 명시 : 제11조(참여대학원생)
 - 공동지도교수인 경우 사업단(팀) 학과 소속 공동 지도교수 전원이 사업에 참여해야 해당 지도학생이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될 수 있음
- 산학협력 전담인력 지원목적 수정 : 제14조의 2(산학협력 전담인력)
 - (前) 고급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원 ⇨ (後)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
- 일부 띄어쓰기 오타 등 수정

□ **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주요 개정 사항**

- 산학협력전담인력의 예산 집행 기준 추가 : 제20조(국제화 경비)
 - 신진연구인력과 산학협력전담인력은 예산 집행 기준이 동일하나, 신진연구인력만 언급되어 있어 산학협력전담인력도 포함하도록 수정
- 신진연구인력 장기 해외 연수 실시에 대한 해석 명확화 : 제20조(국제화 경비)
 - 현 기준 문구 상 사업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진연구인력의 장기 해외 연수 자체가 금지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, 사업비 집행에 한해 제한된다는 명확한 문구로 수정

○ 단기 해외연수 지원기준 구체화 : 제20조(국제화 경비)

- 분야별 기준을 미충족하는 국제학술대회 참석이나 워크숍, 세미나 등의 단순 행사 참석목적의 경비는 지원불가
- 국제학술대회 참석 가능 인원수 및 자격에 대한 해석에 혼란이 있는 바,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구체적 기준 제시 및 해석 명확화

○ 회의 및 행사 개최비 식대 집행 가능 인정 범위 확대 : 제21조(사업단 운영비)

- 종일 행사 등 행사 기간 등에 따라 내부 사전 기안 및 결재 후 추가적 식대 집행이 가능하도록 횟수 제한 기준 완화

○ 교육과정 개발비 인정 기준 구체화 : 제22조(교육과정 개발비)

- 교육과정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필요성, 목적, 근거, 결과물 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
- 연구과제 형태로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을 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 포함, 교육과정 개발 용역과제 인정 항목에 따른 예산 편성 및 대학 자체 규정 준수
- 교육과정 개발 용역과제 인정항목 중 세부 집행 가능 내역 변경
- 내부 구성원 수당 성격의 경비 지급 불가
- 기존 강의(도서) 자료의 단순 편집 등에 대한 원고료, 국외여비, 외국전문가 초청경비 집행 불가
- 일부 비문 문구 수정

○ 정산보고 기한 수정 : 제26조(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)

- 명확한 정산보고 기간 산정을 위해 일수가 아닌 개월 수 기준으로 변경